



OECD 사적연금제도 동향 및 권고 사항

김유미 연구원

장수 · 투자리스크로 인해 연금급여와 자산가치가 연계된 확정기여형(DC형) 연금과 같은 적립식 사적연금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. 이에 OECD는 연금자산을 다양화하고, 기여기간의 장기화, 급여의 연금화 및 세액절감을 통한 저축인센티브 확대를 권고하고 있음. 또한 세액절감 효과를 분석한 결과 납입 · 운용단계에서의 세제 혜택 효과가 연금수급단계에서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.

■ 2000년대 들어 OECD 국가의 GDP 대비 적립식 사적연금자산 비중은 모두 증가하였으며, DC형 연금의 비중은 확대되고 있는 반면, 확정기여형(DB형) 연금은 축소되고 있는 추세임.

- GDP 대비 적립식 사적연금자산 비중이 50% 이상인 국가는 '00년 10개국에서 '15년 13개국으로, 100% 이상인 국가는 '00년 4개국에서 '15년 7개국으로 증가함.
- DC형 연금 자산 또는 가입자 수가 GDP 대비 15% 이상인 국가는 '00년 10개국에서 '15년 16개국으로 증가하였으나 스위스, 캐나다, 미국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DB형 연금가입자 수가 감소하였음.
 - 이러한 추세는 연금 자산과 부채의 매칭문제, DC형 연금제도 장려 및 DB형 연금제도를 축소시키는 입법개혁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.

■ 저금리 · 저성장 및 고령화가 연금제도¹⁾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OECD는 은퇴자산을 다양화하고 기여기간 장기화 및 급여의 연금화를 통해 은퇴소득의 적정성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.

- 저금리 환경하에서는 적립식²⁾ DB형 연금의 부채 확대 및 DC형 연금의 적립자산 축소 문제가, 저

1) 연금제도는 의무(예 공적연금, 사회보장)/자발적 가입, 재원방식(부과식, 적립식), 관리자, 사업주 역할(퇴직연금, 개인연금), 기여금과 급여 연계성, 리스크를 부담자하는 자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운영됨.

2) 부과식(Pay-as-you-go, PAYG) 연금이란 현 세대에서 걷어 들인 기여금으로 현 세대 수급권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이고 적립식(Funded) 연금이란 개인이 각 계좌에 적립한 기여금과 투자수익을 기반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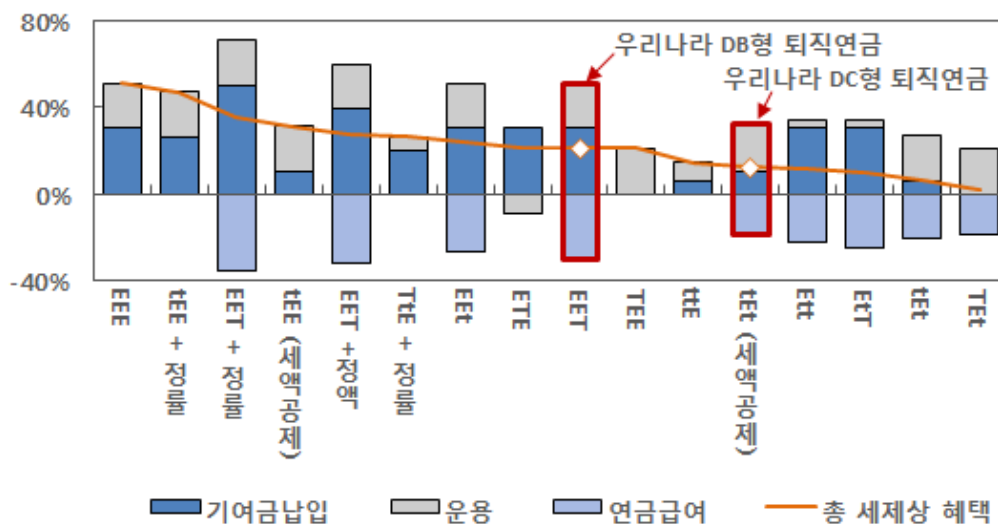
성장 환경하에서는 부과식 공적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.

- 고령화로 인해 부과식 DB형 연금은 재정적 지속가능성 문제가, 적립식 DB형 연금은 지급능력 문제가, 적립식 DC형 연금은 소득 적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.
- 적립식 DC형 연금이 주요 재원인 국가의 경우 장수리스크로 인한 은퇴소득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급여를 연금화하여 공적연금에 보완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함.
- 반면 부과식 공적연금 또는 적립식 DB형 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높게 설계되어 있는 국가의 경우 DC형 연금은 은퇴소득의 적정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낮은 수준으로 설계되어야 함.

■ 또한 OECD는 적립식 사적연금의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세액절감을 통한 저축인센티브를 확대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.

- 일반적으로 퇴직연금에 적용하는 세제 혜택 방식인 EET³⁾ 방식이 일반저축상품에 적용하는 세제 혜택 방식보다 세액절감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.
 - 이는 운용수익 비과세의 영향으로 EET·TEE방식이 TTE·ETT방식보다 총 납입금액의 현재 가치가 낮기 때문임.

〈그림 1〉 퇴직연금 과세특례제도 유형별 세제상 혜택



주: 기여금 납입단계에서 소득공제/세액공제 시, 운용단계에서 세제 혜택 시, 연금급여단계에서 세제 혜택 시 't'로 표현함. 'E'는 비과세, 'T'는 과세를 의미함(T: Taxation, E: Exemption, t: Tax credit).
 자료: OECD(2016), Pension Outlook 2016 .

3) 세제 혜택 제공 시점이 납입, 운용, 수급단계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볼 수 있음(T: Taxation, E: Exemption).

- 연금수급단계보다 납입·운용단계에서 세제 혜택 제공 시 세액절감 효과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, 소득공제보다는 세액공제가, 정액보다는 정률방식의 세제 혜택 효과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(〈그림 1〉 참조).
- 우리나라의 경우 퇴직연금의 세제상 혜택⁴⁾ 효과는 DB형의 경우 17%, DC형의 경우 14%인 것으로 나타남. **kiri**

4) 세제상 혜택은 납입금액의 현재가치 대비 일반저축과 퇴직연금의 부담세액 차이로 정의함.